

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4월 29일
금융위원회

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	주민번호	주소
김산호	600515-*****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
강화서해보험대리점 (황남익)	660902-*****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
이승철	760312-*****	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
주철	561118-*****	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
오지민	780126-*****	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
이광호	830108-*****	서울광역시 동작구 사당동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

3. 서류의 내용 :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처분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김산호	2013.3.18.~2013.6.10.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과 '플래티넘연금보험1.5(무)적립' 등 총 3건의 보험계약(월보험료 110백만원)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OO에게 총 156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	보험업법 제86조, 제98조	업무정지 18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
강화서해 보험대리점 (황남익)	2012.2.13.~2013.7.11.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강OO 등 42명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(보험계약 51건)을 유용한 사실	보험업법 제87조, 제88조	등록취소
보험설계사 이승철	2013.5.27.~2013.11.14. 기간 중 '무배당PCA 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' 등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김OO 등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급받은 약관대출금 87백만원(3회, 보험계약 2건)을 유용한 사실	보험업법 제84조, 제86조	등록취소
보험설계사 주철	2014.9.30.~2014.10.16.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OO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백만원(보험계약 2건)을 유용한 사실	보험업법 제84조, 제86조	등록취소
보험설계사 오지민	2013.10.8.~2014.4.23. 기간 중 '남다른노후를 위한교보연금보험'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관인△△△△음악학원 신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2백만원(보험계약 1건)을 유용한 사실	보험업법 제84조, 제86조	등록취소
보험설계사 이광호	2014.1.16.~2014.1.17. 기간 중 '프리스타일 종신보험'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나OO 으로부터 수령한 선납보험료 명목의 2백만원 (보험계약 1건)을 유용한 사실	보험업법 제84조, 제86조	등록취소

4.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56-983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